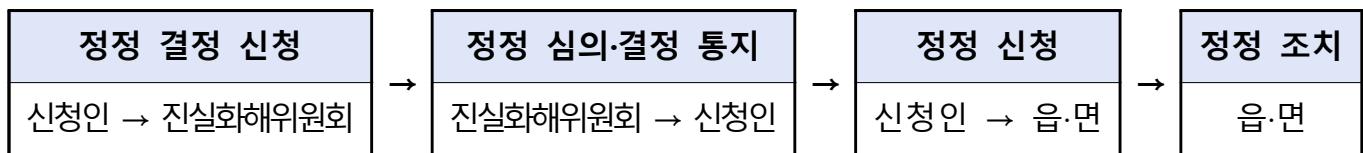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피해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의 사망에 관한 사항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의 사망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사망에 관한 사항 : 사망 연월일, 사망 장소 등
- 신청자격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 정정절차



□ 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정정 결정 신청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02-3393-97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민원실)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사본)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정정 신청 (정정 결정 신청 완료 후 신청)	신청방법	정정 대상자 등록기준지의 해당 <u>읍·면 행정복지센터</u> 방문 접수 (☎061-390-7042)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서⑤ 신청인 신분증

전라남도 장성군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대상자 (피해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진실규명 사건번호		진실규명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부모	성명	부:
	등록기준지	부:	모:
신청내용	신청구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작성(정정)할 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결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수수료 없음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대상자	성명	(한자:)			생존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생존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		
	본(한자)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등록기준지							
	부모	성명	부:			모:		
	등록기준지	부:			모:			
기록사항	사망의 경우	일시		장소				
	신분에 관한 사항							
	정정할 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2.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 하는 서면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수수료 없음